

의안 번호	1347
----------	------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 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연월일 : 2017. 5. 2. (화)
- 나. 제 출 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회부 : 2017. 5. 8.(월)
- 라. 위원회심사 : 2017. 5. 15.(월)

2. 개정이유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지적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가. 용어 추가 및 변경(안 제2조)
 - 제설·제빙작업, 보도, 이면도로의 정의
 -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정의
- 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에 시설물의 지붕 추가(안 제6조)
- 다.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구체화(안 제7조)
- 라.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및 중지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제7조의3)
- 마.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변경(안 제8조)
- 바.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 정비 및 삭제(안 제24조제3항, 제30조)

4. 근거법규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5. 검토의견

- 상위법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에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을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구청장이 임명하게 함으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일부 문구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 계 법 령 〉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